

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

의안 번호	제279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사도 개설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도의 구조 기준을 「농어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리도 이상의 기준을 적용 (안 제2조)
- 나. 다만,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선평폭 4미터 이상, 길어깨 0.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음 (안 제2조)
- 다. 사도는 사도 개설자가 관리함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(2016.7.8.~7.29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
 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3) 규제심사 : 행정규제 사항 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도법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도의 폭 등 기준) 사도의 구조는 「농어촌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리도 이상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교행시설을 설치하는 등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선평을 4미터 이상, 길어깨 0.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3조(사도의 관리) 사도의 관리는 사도를 개설한 자가 관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사도법

사도법 제5조(사도의 폭 등 기준) 사도의 구조는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에 따른 면도(面道) 또는 이도(里道)의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
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(사도의 폭 등 기준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법

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요인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안전건설과장 장근용
연락처	(033) 330 - 2490